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584

발의연월일: 2024. 11. 14.

발 의 자:이만희·권성동·구자근

김용태 · 정희용 · 권영진

서천호 • 박덕흠 • 김기웅

김선교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고금리 기조와 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벤처투자 시장 장기침체로 농식품 경영체에 대한 투자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농식품 경영체의 성장을 지원하고 농식품 투자시장 내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을 유입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설립과 이를 통한 금융 기관 차입을 가능하게 하여 후속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민간의 대규모 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 결성 등을 허용하여 민간자본의 농식품 투자시장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식품 경영체의 성장 기반 조 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초기기업 발굴・육성에 유리한 창업기획자를 농식품투자조합

을 결성할 수 있는 자에 추가하여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다른 농식품투자조합의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출자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하는 세컨더리펀드 결성 근거를 마련하여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다른 농식품투자조합의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출자지분을 인수 할 수 있는 세컨더리 펀드 결성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2호).
- 나. 초기 기업 발굴·육성에 유리한 창업기획자를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자에 추가함(안 제11조제1항).
- 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설립과 당해 투자목적회사 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허용함(안 제14조의2 신설).
- 라. 다른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재간 접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9조의2 신설).
- 마.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 신설에 따른 행정처분 사유를 추가함(안 제28조).
- 바.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 및 투자목적회사 제도 신설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 등을 추가함(안 제30조).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 농림수산식품산업을 운용하는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대하여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출자
- 라. 다른 농식품투자조합의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조합 출 자지분 전부 또는 일부의 인수

제11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 (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4조의2(농식품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①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 집행조합원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 1.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사업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

- 2. 농식품투자조합이 단독으로 100퍼센트 출자한 회사일 것
- 3. 상근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점 외에 영업소 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 4.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한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게 회 사 재산의 운용을 위탁할 것
- ②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31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549조제2항제2호는 투자목적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투자목적회사는 차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한도,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 비율 산정방식과 그 밖에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투자목적회사 업무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제14조(제5항제2호는 제외한다)부터 제16조까지 및 제22조(제1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농식품투자조합"은 "투자목적회사"로 본다.

제17조제1호 중 "벤처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창업기획자"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① "민간재간접농

식품투자조합"이란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출자금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인 농식품투자조합을 말한다.

- 1. 벤처투자회사
-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3. 투자관리전문기관
-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 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업자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으로 등록하려는 조합은 조합원의 범위,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③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공동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다.
- ④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 출자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다른 농식

품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 ⑤ 제14조제5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위제한 등의 요건을 달리정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절차·방법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식품투자조합"을 "농식품투자조합 또는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13조제1항"을 "제13조제1항 또는 제19조의2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중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창업기획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5호,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14조제5항"을 "제14조제5항 또는 제19조의2제5항"으로 한다.

- 4.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등록 후 3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 출자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다른 농식품투자 조합에 대한 출자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6. 제14조의2를 위반하여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거나 운영한 경우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식품투자조합이"를 "농식품투자조합,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 또는 농식품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등록한"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제13조제1항"을 "제13조제1항 또는 제19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같은 항 제3호"를 "제13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14조제3항 또는 제5항"을 "제14조제3항, 제14조제5항 또는 제19조의2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4조의2를 위반하여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거나 운영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투자"란 다음 각 목의 사항	2
을 말한다.	<u></u>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다. 농림수산식품산업을 운
자산을 농림수산식품산업	용하는 농림수산식품경영
및 관련 사업에 운용하고	체에 대하여 그 성과의
그 수익을 배분하기 위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하
여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는 자금의 출자
대한 자금의 지원	
<u><신 설></u>	라. 다른 농식품투자조합의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조합 출자지분 전부
	<u>또는 일부의 인수</u>
제11조(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제11조(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농식품투자모태조	
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	
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	
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1. ~ 5의2. (생 략)	1. ~ 5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6. (생 략)

 ② ~ ⑤ (생 략)

 <신 설>

-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
- <u>7</u>. (현행 제6호와 같음)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제14조의2(농식품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①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 1.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을 농 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사업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 율 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
 - 2. 농식품투자조합이 단독으로100퍼센트 출자한 회사일 것
 - 3. 상근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 할 것
 - 4.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한 농 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

합원에게 회사 재산의 운용 을 위탁할 것

②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에 <u>따른 주식회사 또</u> 는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 용한다. 다만, 「상법」 제317 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549 조제2항제2호는 투자목적회사 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투자목적회사는 차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목적회 사의 차입 한도,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 비율 산정방식과 그 밖에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투자목적회사 업무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제14조(제5 항제2호는 제외한다)부터 제16 조까지 및 제22조(제1호는 제 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농식품투자조합"은 "투자목적 회사"로 본다.

제17조(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제17조(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아니면 농식품투자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1. 벤처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 1.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 금융업자의 등록이 취소되었 거나 말소된 경우

2. · 3. (생략)

<신 설>

 	 	 	 	 _

융업자 또는 창업기획자----

2. · 3.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 조합에 대한 특례) ① "민간재 간접농식품투자조합"이란 제11 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출 자를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출자금 총액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인 농식품투자조합을 말한다.

- 1. 벤처투자회사
-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3. 투자관리전문기관
-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 른 조합 및 중앙회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 춘 집합투자업자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
-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재간접농 식품투자조합으로 등록하려는 조합은 조합원의 범위, 존속기 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 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③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 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로 하되, 농림축산식품부령 또 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 지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④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 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 출자금 중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 액을 다른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14조제5항제4호에도 불구
- 하고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

제28조(행정처분) 농림축산식품 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을 명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 원을 중단할 수 있다.

-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 1. 제13조제1항 또는 제19조의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 한 경우
- 업금융업자의 등록이 취소되 거나 말소된 경우
- 3. (생략)

<신 설>

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위제한 등 의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간재간접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절차 • 방법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한다.

제28조(행정처분) ------농식품투자조합이 다음 각 호 식품투자조합 또는 민간재간접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 <u>농식품투자조합-----</u>

- 2제2항-----
- 2.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 2.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 융업자 또는 창업기획자----
 - 3. (현행과 같음)
 - 4.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등 록 후 3년이 지난 다음 날까 지 출자금 중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

4. 제14조제5항에 따른 업무집 행조합원의 금지행위를 위반 한 경우

<신 설>

<u>5</u>. · <u>6</u>. (생 략)

- 제30조(등록의 취소) 농림축산식 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u>농식품투자조합이</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u>등록한</u> 경우
 - 2. <u>제13조제1항</u>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임원 또는 투자심사업무

액을 다른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에 사용하지 아니
한 경우
<u>5</u> . <u>제14조제5항 또는 제19조의</u>
<u> 2제5항</u>
6. 제14조의2를 위반하여 투자
목적회사를 설립하거나 운영
한 경우
<u>7</u> .⋅ <u>8</u> .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제30조(등록의 취소)
<u>농식품투자조합,</u> 민간재간
접농식품투자조합 또는 농식품
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가
1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2. 제13조제1항 또는 제19조의
2제2항

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u>같</u> 은 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 또는 투자심 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 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 지 아니하다.

3. <u>제14조제3항 또는 제5항</u>을 위반한 경우

<신 설>

4. (생략)

		제13조제1항
	<u>제3호</u>	
3	. <u>제14조제3항,</u>	제14조제5항
	또는 제19조의2	제4항

- 4. 제14조의2를 위반하여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거나 운영한 경우
- <u>5</u>. (현행 제4호와 같음)